

2023. 3. 대검찰청

- 2023. 2. 23.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20. 5. 19.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)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. 【2021헌가9 사건 등】

-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(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, 제4항, 제5항)

- 재심절차 안내
 - 재심청구권자(형사소송법 제424조)
 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
 -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

 - 재심신청 방법
 -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(형사소송법 제423조)
 - 단,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규정(재소자에 대한 특칙)이 준용되므로,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(제420조 내지 440조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